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b o k e u m F- 복음실버타운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노인 학대란 ?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예측 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된다.



다툼, 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노인학대 예측 징후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학대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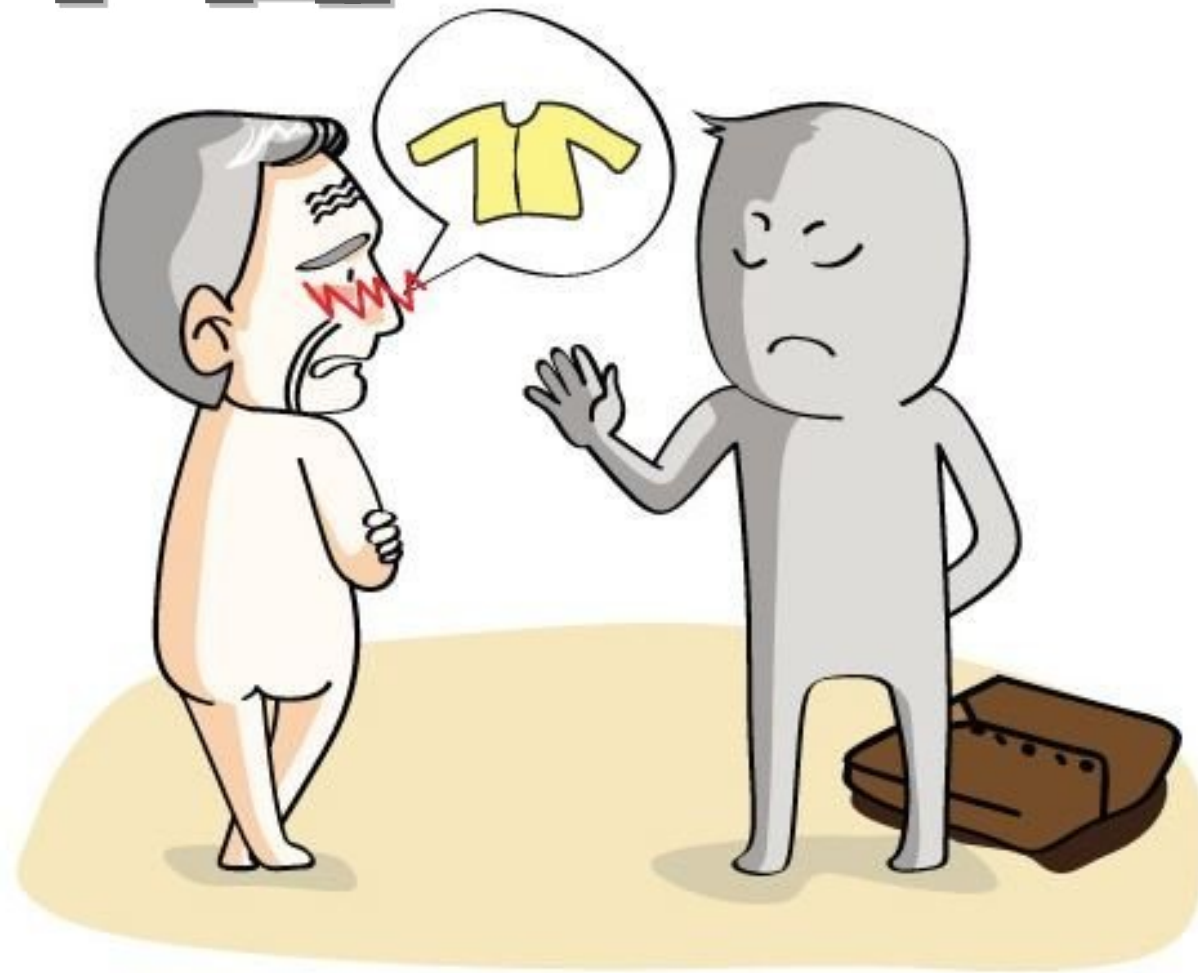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학대의 유형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학대의 유형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노인학대의 유형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
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의 유형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예방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대응방법



시설은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대응방법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의, 외부 의료기관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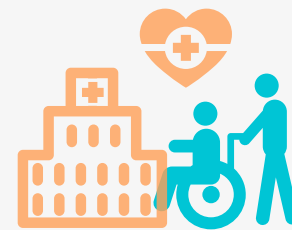


학대사실을 알게 된 시설운영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노인학대 대응방법



신고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
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
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
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를 멈추게 합니다.

의심되는 학대는 **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